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| огн | 보수월액(고지금액) | | 소득월액(| 납부금액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월별 | 건강보험료① | 장기요양보험료② | 건강보험료③ | 장기요양보험료④ |
| 01월 | 107,890 | 9,180 | 0 | 0 |
| 02월 | 107,890 | 9,180 | 0 | 0 |
| 03월 | 107,890 | 9,180 | 0 | 0 |
| 04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05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06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07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08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09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10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11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12월 | 146,430 | 12,460 | 0 | 0 |
| 연말정산 | 464,040 | 34,170 | | |
| 합계 | 2,105,580 | 173,850 | 0 | 0 |
| 총합계 | | | | 2,279,430 |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| 월별 |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|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01월 | 148,230 | 0 |
| 02월 | 148,230 | 0 |
| 03월 | 148,230 | 0 |
| 04월 | 148,230 | 0 |
| 05월 | 148,230 | 0 |
| 06월 | 148,230 | 0 |
| 07월 | 201,190 | 0 |
| 08월 | 201,190 | 0 |
| 09월 | 201,190 | 0 |
| 10월 | 201,190 | 0 |
| 11월 | 201,190 | 0 |
| 12월 | 201,190 | 0 |
|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| 0 | |
|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| | 0 |
|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| | 0 |
| 합계 | 2,096,520 | 0 |
| | 총합계 | 2,096,520 |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-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번 | [호 | 증권번: | 호 | 주피보험 | 자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| 수익자) | 종피보험자2(| (수익자) | 종피보험자3(| 수익자) | |
| | 디비손해보험 = | 주식회사 | 다이렉트개 | 인용 | | | |
| 보장성 | 201-81-45 | 5*** | 2201933027 | 79000 | 890212-***** | 조재훈 | 655,540 |
| | | | | | | | |
| 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| 655,540 |

1.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**4-28-24*** | 0 *** | 일반 | 2,600 |
| **1-91-70*** | 홍*** | 일반 | 4,700 |
| **5-18-00*** | 뉴**** | 일반 | 7,450 |
| **3-92-00*** | * ***** | 일반 | 123,3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138,05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138,05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30,750,749 | 14,000 | 80,850 | 106,290 | 30,951,889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일반 | 18,234,760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전통시장 | 14,000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대중교통 | 79,600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도서공연등 | 16,910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일반 | 12,515,989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대중교통 | 1,250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도서공연등 | 89,380 |
| 인별합 | 계금액 | | | 30,951,889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
| 235,080 | 0 | 0 | 0 | 235,080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일반 | 215,060 |
| 직불카드 등 | 375-88-00*** | 한국카카오은행(주) | 일반 | 20,02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235,080 |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
| 881,550 | 0 | 0 | 22,820 | 904,370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구분 | 종류 | 01월 | 02월 | 03월 | 04월 | 고레디사그에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05월 | 06월 | 07월 | 08월 | 공제대상금액 |
| | | 0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 | 일반거래 | 69,100 | 78,600 | 109,700 | 71,500 | |
| 현금영수증 | | 51,500 | 61,300 | 81,500 | 77,450 | 881,550 |
| | | 48,400 | 71,300 | 90,200 | 71,000 | |
| 현금영수증 | 도서.공연비등 거래 | 0 | 0 | 13,000 | 0 | |
| | | 0 | 0 | 0 | 9,820 | 22,820 |
| | | 0 | 0 | 0 | 0 |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 | |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| 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 | 대출종류 (상품명) |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| 상환 기간 | 주택 취득일 | 저당권 설정일 | 연간합계액 | 소득공제 대상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(사업사면오) | | 차입금 | 고정금리 차입금 |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| 당해년 원금상환액 | | 네상백 |
| (주) 국민은행 (201-81-68***) | 해당없음 (KB 주택구입자금 대출 <u>(</u> 아파트잔금 | 2017-07-14 2047-07-15 | 30년 | 2017-07-14 | 2017-07-14 | 5,724,982 | 5,724,982 |
| (201-81-68***) | 대출 (아파트잔금 무담보)) | 192,000,000 | 192,000,00 0 | 192,000,000 | 6,399,996 | 3,721,302 | 3,721,302 |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조재훈 | 890212-***** | |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업자번호 | 단체명 | 기부유형 | 기부금액 합계 | 공제대상 기부금액 |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603-82-07337 | (사)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 |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| 10,000 | 10,000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10,000 |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